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0 선고 2021가합536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1. 31 선고 2022나2209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0 선고 2021가합5363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김수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수

변론 종결 2022. 3. 30.

판결 선고 2022.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9. 10. 28.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257,968,2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7,968,2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C은 2019. 7. 9. C이 원고로부터 2018. 4. 25.자로 140,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율 연 24%에 차용하였고 이를 2020.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329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과 1980. 1.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E, F를 두었다.

다. 피고와 C은 2019. 10. 23.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2019. 11.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C은 1995. 8.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0. 2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C은 2019.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남편 C의 유책사항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대구광역시 달서구 G, H호)를 아내 B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기업은행에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고, 2차로 I에게 일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채무한도액

금일억오천만원 근저당 설정) 가산을 탕진한 행위

- 아내 B와 상의 없이 금융기관 담보대출(J조합, K조합, L은행 - 마이너스 통장 사용),
보험약관대출(M 1건, N 2건), 카드대출(6건) 및 남편 C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하여
늘어난 부채

2. 위자료 지급

- 남편 C이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중 85%를 법적공증절차를
거쳐 아내 B이 받도록 동의한다.

3. 위자료 지급 조건

- 아내 B은 G아파트 H호 근저당 설정권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진다.
- 아내 B은 M 보험약관대출을 상환한다.
- 상기 사항 이외의 모든 채무는 남편 C이 상환 의무를 진다.

바.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협의이혼 신고 당시 다수의 대여금 및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2021. 11. 18.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원리금 합계 257,968,2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9. 10. 28. 전부터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12. 26. 대구 동구 ○ 대 423㎡를 낙찰받아 1995. 1.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4. 8. 15.경 위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C은 1995. 12. 26.경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 달성군 P 대 256㎡와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11.경 위 부동산을 29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다) C은 1996. 7. 22.경 대구 달성군 Q 임야 6,380㎡에 대하여 199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2016. 12. 31. '이 사건 부동산은 2017년도 중 피고 앞으로 증여 등기해준다. Q 땅1) 보상받으면 피고가 알아서 조치토록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위 다)항 기재 부동산은 2017. 4. 3.경 2017. 3.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C은 그 무렵 보상금으로 203,069,330원을 수령하였다. 위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29,145,101원 납부, L은행에 대한 채무 114,000,000원 변제, C의 R, S 등에 대한 개인채무와 N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30,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19. 12. 2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85,496,254원, I에 대한 근저당채무 11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2020. 1. 8. 접수 제2222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2014. 3. 25./2014. 3. 25.	중소기업은행	C	156,000,000
2	2019. 2. 1./2019. 2. 7.	I		100,000,000
3	2019. 4. 22./2019. 4. 22.	50,000,000		

사) 피고와 C이 혼인기간 중 가입한 보험계약의 2019. 10. 21.경 보험해지예상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금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11. 21. T약관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피고	T(M, 증권번호 U)	23,969,507	21,440,000
피고	T(M, 증권번호 V)	2,176,247	0
E	W2종(N)	52,301,209	49,480,000
F	W1종(N)	4,990,951	4,720,000

아) 경북 고령군 X 답 672m² 중 1/3 지분, Y 대 347m², Z 대 555m², AA 대 56m², AB 전 245m², AC 임야 21,818m² 토지에 대해 2008. 5. 15.경 1995. 9.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09. 1. 16. 및 2018. 12. 10. 경북 고령군 X 답 672m²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도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1.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2020.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정평가액은 444,881,800원이었으나 4차례 유찰되어 위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

자) C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 2014. 2.경 퇴직하였고, 2014. 3. 4.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및 퇴직수당공제일시금으로 36,035,420원 및 36,091,5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4. 3.부터 2015. 12.까지 66,144,960원, 2016. 1.부터 2019. 9.까지 136,090,350원(대여금채무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120,385,860원), 2019. 10.부터 2021. 1.까지 12,401,680원(대여금채무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8,906,76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2.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C이 받게 될 퇴직연금 액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2,570,590원을 지급받고 있고(2019. 12.부터 2021. 1.까지의 실지급액은 36,001,110원), 나머지 15%는 C이 지급받고 있다.

차)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피고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가 C와 이혼한 이후에도 성년인 자녀 1명과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6, 27, 29, 30, 32,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10. 28.에 이루어졌고, C과 피고가 2019. 10. 23.경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2019. 11. 2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이후 실제 협의이혼한 때와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약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둔 부부 사이였고,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 등 부부공동재산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30,000,000원 가량이나, 위 부동산에 경료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306,000,0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직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85,496,254원,

에게 110,000,000원을 변제한 뒤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③ 경북 고령군 AF면 소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상당하나, 이미 C의 채권자 중 1인에 의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차례 유찰되어 실제로 위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입찰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사립학교연금을 수령해오고 있고 피고가 그 중 85%를 수령하고 있으나, C이 2014. 3. 4.경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71,126,920원을 수령하였고, 2019. 11.까지는 C 단독으로 연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2019. 9.까지의 연금 수령액이 2억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9. 12.부터 C이 수령할 연금 중 85%를 받아가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 피고의 재산분할 몫을 크게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경북 고령군 AF면 소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C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적극재산은 보험해지예상환급금이 있는데, 예상해지환급금에 근접하는 보험계약대출금이 존재하였고, T계약(증권번호 U)의 경우 피고가 2019. 11. 21. 위 보험계약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⑥ C은 2016. 12. 31. 대구 달성군 Q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면 피고에게 위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보상금 203,069,330원 중 양도소득세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C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⑦ 달리 피고와 C이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⑧ 이 사건 증여계약과 위와 같은 연금 수령액의 조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함께 위와 같은 부부공동재산들의 처분에 대한 대가 및 C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까지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희영

판사문헌정

판사김준우

별지

1) 위 다)항 기재의 대구 달성군 Q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